

## 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101호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21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, 식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‘임산·수유부용 식품’, ‘특수의료용도등식품’, ‘체중 조절용 조제식품’까지 확대하는 한편,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·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시·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

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식품안전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363-700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

○ 전화 : 043-719-2016, 팩스 : 043-719-2000

이메일 : [dong318@korea.kr](mailto:dong318@korea.kr)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상장·감사장”을 “감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의 가목을 삭제한다.

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경우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·유아식 제조·가공업자

제69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등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·가공업자

별표 15 제2호 중 “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자가”를 “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자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아. 알가공품

자. 유가공품

별표 17 제4호라목 중 “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”을 “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 등을”로 한다.

별표 23. II. 개별기준 1. 식품제조·가공업 등 제7호카목에 8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)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별표 23. II. 개별기준 2. 식품판매업 등 제7호라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별표 26 제3호다목 중 “890원”을 “890원(다만, 제8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중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교육이수증(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. 다만, 지위승계 신고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상속인인 경

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

- 4. 건강진단결과서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. 다만, 지위승계 신고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

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9조의2제 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- 1.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등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·가공업자: 2019년 12월 1일
- 2.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등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·가공업자: 2020년 12월 1일
- 3.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등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·가공업자: 2021년 12월 1일
- 4.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등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·가공업자 및 2017

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등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·가공업자 : 2022년 12월 1일

**제2조(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** 별표 2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